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가단105499(본소), 2016가단107129(반소)
판결 [구상금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반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1. A

2. B

피고(반소원고)C

변론 종결2016. 12. 8.

판결 선고2016. 12.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56,528,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6. 5.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4. 접수 제1007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 B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가, 나머지 5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 B에게 56,528,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였다가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4. 접수 제100795호로 원고(반소피고)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의 2011.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의정부지방법원 2008. 4. 4. 접수 제44854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남면농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남면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5. 5.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 A은 위 임의경매를 피하기 위하여 2016. 4. 22. 피고를 대위하여 남면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56,528,185원을 변제하였고, 남면농업협동조합은 2016. 7. 6. 피고에게 원고 A의 위 대위변제로 남면농업협동조합의 채권이 원고 A에게 이전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1)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채무자인 피고를 위하여 남면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남면농업협동조합은 위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 A이 채권자인 남면농업협동조합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A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56,528,185원에 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구상금 56,528,185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6. 4. 23.부터 이 사건 본소장부분 송달일인 2016. 5.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법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피고의 동의 없이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69조에 의하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민법 제480조 제1항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바, 피고의 동의를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A의 대위변제가 채무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B의 예비적 본소청구

원고 B는,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금에 관한 구상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원고 B가 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56,528,185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이 민법 제48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대위변제금 56,528,185원에 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B의 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A에 대하여 반소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피고의 반소청구가 원고 A의 본소청구와 상호 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반소의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호 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소와 반소의 양 청구가 소송물 또는 그 대상·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거나 반소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은 본소로서 민법 제480조에 의한 임의대위 또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법정대위를 선택적으로 주장하면서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고, 민법 제481조의 법정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한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의 본소청구를 다투고 동시에 반소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원고 A의 민법 제481조에 의한 법정대위를 근거로 한 구상금 청구와 소송물의 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원고 A의 본소청구와 상호 관련성이 있으므로, 원고 A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의 발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A, B,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각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은, 궁극적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원고 B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고 A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주위적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예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항정수

별지